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291800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 명찰 패용

진 정 인 ○ ○ ○

피진정인 ○ ○ 교도소장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대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동순찰대원들이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진정요지 가항과 나항은 각하하고, 다항과 라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I. 진정에 대한 판단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 수용자로, 피진정인

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가.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기동순찰대원(CRPT)의 복장에 명찰을 달지 않아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치간 칫솔과 면도기를 거실 내에 보관하여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코로나19를 이유로 잔반수거용 플라스틱 용기도 회수한 후 다시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수용 거실 내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배식구를 통하도록 하여 위생을 해치고 있다.

라. 동절기에는 온수 목욕을 주 1회 실시하는데, 피진정인은 수용자들이 온수 목욕을 하는 날에는 운동시간을 45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

현재 피진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교정시설에서는 보호장비 사용 전 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 시 반드시 바디캠 등 영상장비로 채증하고 1일 4회 이상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를 기록하도록 하여 보호장비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또한 기동순찰대(CRPT)의 업무는 수용자의 도주, 소란, 난동, 싸움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하고 엄중관리대상자, 상습규율 위반자 등 교정 질서를 저해하는 수용자를

상대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동순찰대원의 직급과 이름표가 수용자에게 노출되면 업무의 특성상 수용자와의 마찰의 소지가 다분하다. 피진정기관을 비롯한 교정시설에서는 조직 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기동순찰대원의 근무복에 직급과 이름표를 부착하고 있지 않다.

나. 진정요지 나항

수용자의 자유로운 치간 칫솔 사용과 교정사고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하여, 치간 칫솔을 담당 근무자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담당 근무자는 바로 교부하여 사용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여 수용자의 처우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잔반 수거용 플라스틱 용기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필수 생활용품이 아니며, 과거 지급한 적이 있으나 잔반 처리 문제가 해결되어 현재 지급하고 있지 않다.

다. 진정요지 다항

수용자들이 배식구를 통해 쓰레기를 배출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수용동 거실문에는 배식구와 별도로 쓰레기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동 청소부들이 해당 배출구를 통해 수용자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라. 진정요지 라항

피진정기관에서는 주 6일(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마다 45분의 실외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6일 가운데 온수 목욕(15분)을 실시하는 동절기 의

목요일만 실외운동 시간을 20분으로 단축하고 있다. 이는 인력 부족 문제로 동일 근무자가 운동과 목욕 근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진정기관 외에 대부분의 교정시설 역시 운동과 목욕을 병행하는 경우 운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기동순찰대원(CRPT)의 이름표와 계급장이 없으므로 명패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본 진정요지는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향후 발생될 기동순찰대원으로부터의 피해에 대한 법률적 구제절차를 위하여 명찰을 착용토록 해달라는 것인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거실 내에서 치간 칫솔, 면도기, 잔반 수거용 플라스틱 용기 등을 직접 소지하여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교도소 운영에 관한 민원성 사안으로서,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이 단순 고충을 넘어서 수용자의 기본권 영역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진정요지는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거실 배식구를 통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

장한다. 피진정기관 수용동 거실문에는 배식구와는 별도의 쓰레기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고, 수용동 청소부들이 해당 배출구를 통해 수용자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 진정요지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서 수용자에게 온수 목욕을 허용하는 날에는 운동시간을 45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진정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동일 근무자가 운동과 온수 목욕 관리·감독 업무를 동시에 병행하므로, 동절기 온수 목욕을 실시하는 날에 운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되는 점,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32조 1항은 운동과 목욕을 병행하는 경우는 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의 운동시간 단축은 이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 진정요지는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진정요지 라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II. 기동순찰대원(CRPT) 명찰 미패용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위원회는 2018년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 2019. 1. 16. 법무부장관에게 기동순찰대원의 복장에 명찰을 패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19. 6. 20. 기동순찰팀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하거나, 캠코더·바디캠 등 영상장비를 원칙적으로 사용, 증거자료는 90일 이상 보존토록 조치하는 등 현재에도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동순찰팀원은 각 기관별 5~8명 내외 소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 직원과 다른 복장 착용으로 신분 파악이 더욱 용이하므로, 명찰 미패용으로 인해 수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과잉대응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볼 근거도 없고, 수용자로부터 협박·진정,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현실 여건을 반영, 명찰 패용은 현장업무를 더욱 소극·기피할 우려가 크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불수용한바 있다.

본 진정사건은 각하 및 기각하였으나, 법무부의 권고 불수용 이후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변경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동순찰대원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 행사의 비례의 원칙 확보 등 교정시설 내 기동순찰대원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기동순찰대원 명찰 패용의 필요성

교정시설 수용자가 성명불상의 기동순찰대원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기동순찰대원은 명찰을 패용하지 않으므로 수용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호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동순찰대원은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질 경우 위법한 공권력행사가 됨은 물론이다. 우리 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방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수용자 대부분이 기동순찰대원은 무조건 강압적인 물리력을 사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기본권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및 제7조 제4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3항 등을 살펴보면, 경찰 등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때 의무적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 측면이 크다.

이와 같이 볼 때, 보호장비와 무기를 사용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도 위와 같은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하는 타 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기본권제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도 있으며, 교정시설 근무자들로 하여금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명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대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동순찰대원들이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제50조(목욕횟수)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32조(운동시간) ① 운동은 독거수용자는 1시간 이내, 혼거수용자는 30분 내외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운동과 목욕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악천후 등으로 부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운

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흥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작전지역에서 제2항에 따른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5.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